

수 원 지 방 법 원

제 9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09가합8829 증권관련집단소송

신 청 인 1. 박윤배

(대표당사자)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370-383 산들바람빌딩 2층

2. 서울인베스트먼트클럽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1613호

대표이사 박윤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길, 함승완, 정희선

신 청 인 주식회사 진성티이씨

(피 고) 평택시 세교동 544-2

대표이사 윤우석, 마영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김관영

주 문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8829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해를 허가한다.

이 유

1. 사건의 진행 경과

가. 신청인 박윤배와 서울인베스트먼트클럽주식회사는 2009. 4. 13. 이 사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원은 2009. 6. 19. 위 신청인들을 원고 대표당사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양당사자는 2010. 1. 15. 별지 화해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화해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법원은 2010. 1. 21.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결정을 하면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화해허가 신청사실 및 그 내용을 2010. 2. 3.경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공고하고, 2010. 2. 4.경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매일경제신문 A19면 하단에 게재하여 공고하였으며, 2010. 2. 13.경 확인된 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고지하였다.

2. 화해사항에 대한 판단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재판상화해는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구성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는바, 공정성, 상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 공정성

양당사자는 화해금액을 전체 손해액에서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구성원 상호간 차등 없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당성

화해금액 2,743,392,402원(현금 1,371,696,201원+주식 199,664주)은 제외신고자의 손해액을 공제한 전체 손해액 11,528,292,727원(12,186,389,783원-658,097,056원)의 약 23.7%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바,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적정성

재판상화해로 이 사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킴으로써, 총원은 주가하락으로 입은 손해를 신속히 보전 받을 수 있고, 피고 회사는 경영상의 불안정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여 경영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는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판상화해허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30.

재판장 판사 김태병

 판사 김도현

 판사 유성현

화 해 사 항

1. 총원의 범위

총원은, 피고가 제27기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2008. 8. 14.부터 파생상품 관련 분기보고서 정정공시를 한 2008. 12. 19.까지 사이에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08. 12. 19.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2. 총원에 지급될 총 금액 및 지급방법 등

가. 지급총액

피고가 총원에게 지급할 총 금액은 29억원으로 한다.

나. 지급방법

지급액의 2분의 1은 현금으로, 나머지 2분의 1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한다. 지급하는 주식의 1주당 단가는 피고의 2009. 8. 14.자 코스닥시장 거래종가인 6,870원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자기주식의 수량은 총 211,063주($\approx 1,450,000,000\text{원} \div \text{단가} 6,870\text{원}$)이다.

다. 손해액의 산정

대표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전체 손해액 12,186,389,783원은, 아래 1), 2)항의 손해를 합산한 금액이다.

1) 처분주식으로 인한 손해

총원기간(2008. 8. 14.부터 2008. 12. 19.까지의 기간) 중 매수한 주식의 주당 평균매수단가에 매도기간(2008. 12. 19.부터 한국거래소가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에서 최종

거래일로 정한 2009. 8. 14.까지의 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수를 곱한 금액에서, 매도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의 매도가액을 뺀 금액

2) 보유주식으로 인한 손해

총원기간 중 매수한 주식의 주당 평균매수단가에 2009. 8. 14. 24:0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곱한 금액(보유주식의 취득총액)에서, 피고 회사의 2009. 8. 14.자 코스닥시장 거래종가인 6,870원에 2009. 8. 14. 24:0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곱한 금액(보유주식의 2009. 8. 14.자 평가총액)을 뺀 금액

라. 제외신고자 처리

소송허가결정에 대하여 제외신고를 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피고는 대표당사자들에게, 위 29억원에서 제외신고자의 손해액이 대표당사자들 주장의 전체 손해액 12,186,389,783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3. 화해금의 산정

소송허가결정 당시 고지된 제외신고기간(2010. 1. 25.부터 2010. 3. 26.까지) 중 ○○○ 등 구성원 15인이 제외신고를 하였고 그 합계 손해액은 658,097,056원인바, 위 산식에 따라 화해금을 다시 산정하면, 피고가 지급할 화해금은 2,743,392,402원[29억원 $\times$ $\{1 - (658,097,056 \text{원} \div 12,186,389,783 \text{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대표당사자들에게 현금 1,371,696,201원 및 자기주식 199,664주($\approx 1,371,696,201 \text{원} \div \text{단가} 6,870 \text{원}$)를 지급하기로 한다.

4. 화해금의 지급 내용 및 방법

가. 피고는 대표당사자들에게 2010. 5. 31.까지,

1) 1,371,696,201원을 지급하되, 만일 위 기일을 지나칠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2)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199,664주를 양도하되, 만일 위 기일을 지나칠 때에는 미양도 주식 1주당 피고의 2009. 8. 14.자 코스닥시장 거래종가인 6,870원으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2010. 6. 1.부터 다 양도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위 가.의 1), 2)항 기재 현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여 보관시키고, 가.의 2)항 기재 주식의 양도는 대표당사자들 소송대리인의 증권계좌(삼성증권 *****-*****, 계좌주 : 조영길)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행한다.

5. 분배의 기준 및 방법

각 구성원에 대한 분배액은 피고가 지급한 화해금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전체 손해액에서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화해금을 분배함에 있어 현금과 주식의 비율을 1:1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분배계획안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6. 면책

가. 대표당사자들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나아가 총원에 포함된 각 구성원은 피고 및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향후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고, 위 피고측을 행정·사법기관에 수사·조사 의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총원의 각 구성원은,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책사유 또는 책임을 인정하였

기 때문에 위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끝.